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162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채용 개요

○ 신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명)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농작업 안전관리	2	2026. 5. 1. ~ 10. 31. (6개월)	○ 농가 현장방문,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 농가관리 ○ 농작업 재해현황조사, 안전교육 등	제주농업기술센터 (애월읍 상귀리)
	2	2026. 3. 1. ~ 9. 30. (7개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남원읍 하례리)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2 근로조건 및 대우

구 분	주 요 내 용
보 수	• 월 급여 : 2,861,000원 * 월급액은 '2026년 농촌진흥청 고객지원기간제(기술위원)' 기준 적용 - 기본급 2,671,000원, 급식비 140,000원, 위험수당 50,000원 • 기타 명절휴가비(275,000원, 연 1회)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토·일요일 등 공휴일 휴무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관·내외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매월 소정 근로일수 개근 시 익월에 1일 유급휴가 부여
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따름 ※ **수습제도**: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우선 고용 해당 직종인 경우 만50세 또는 만 55세 이상자 우대조건 추가 가능)

○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응시 결격사유 등 : 응시접수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관련 법령상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아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기타 농작업 안전관련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 기술사: 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기　사: 농작업안전보건,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 산업기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공학, 직업환경의학

4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선발절차 흐름도

선발·모집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 계약
2025년 11월 10일		2025년 11월 17일 ~ 12월 19일		2026년 1월		2026년 1월		2026년 2~5월

○ 전형절차

구 분	주요내용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농업 및 산업분야 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학위·자격증 소지 여부 등 ※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는 전원 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 요소(5개 항목, 총점 100점) ① 전문지식 및 응용력(20점), ② 의사표현 정확성 및 소통역량 (20점) ③ 성실성 및 협조성(20점), ④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20점), ⑤ 근로자세 및 참여의지 등(20) • 최종합격자는 5개 평정요소의 종합평가점수와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60점 미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① 전문지식 및 응용력 > ② 의사표현 정확성 및 소통역량> ③ 성실성 및 협조성 ④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⑤ 근로자세 및 사업의지 순서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table>
<tr><th>전형일정</th><th>일 시</th><th>비 고</th></tr>
<tr><td>모집공고</td><td>2025년
11월 10일</td><td>•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청 고시 공고
※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2. 19.</td></tr>
<tr><td>응시원서
접수</td><td>2025년
11월 17일
~ 12월 19일
(18:00까지)</td><td>•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
- 방문접수: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18:00시까지) 도착분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전자우편: 관련서류를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요망,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
<table>
<tr><th colspan="3">접 수 방 법</th><th rowspan="2">모집기관
(문의처)</th></tr>
<tr><th>방 문</th><th>등기우편</th><th>전자우편</th></tr>
<tr><td>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td><td>(635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td><td>gmlhj2
@korea.kr</td><td>(064)
760-7542</td></tr>
</table>
• 제출된 응시원서 등은 수정 및 등록 취소 불가</td></tr>
<tr><td>서류전형
합격자 발표</td><td>2026년
1월 중</td><td>• 농업기술원에서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통지</td></tr>
<tr><td>면접전형</td><td>〃</td><td>• 농업기술원에서 추후 통지</td></tr>
<tr><td>최종합격자
발 표</td><td>2026년
1월 중</td><td>• 농업기술원에서 추후 통지</td></tr>
<tr><td>채용계약</td><td>2026년
2~5월 중</td><td>• 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 및 실시</td></tr>
</table>

5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제출서류	비 고
•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원 서 접수시 제 출
• **【【해당자】】** 석·박사 학위증 사본 1부,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
• **【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
• **【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재직 기관에서 발행받아 첨부)	〃
•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기타사항 - 위 제출서류는 신청자격 검증,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학위논문은 요약서(논문별 A4용지 2매 이내)와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위, 업무수행 내용, 총 재직기간, 발행기관의 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6 우대사항

○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외 가산점 부 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까지).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모집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비리 관련 >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예정 인원과 동수 또는 미달한 인원이 응시한 경우에는 3일간 연장공고를 실시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체결일 기한까지 미 체결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근무 개시일 부터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후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 064-760-7512, 담당자명 : 이현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모집에 응모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자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응모지역	도	00도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시군	00시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0000. 00. 00 (만 00세)
			한 자			
		현 주 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1. 학 력

기 간	학력 및 학과	학 위 구 분
. . ~ . .	대학교 학과	학 사
. . ~ . .	대학교 학과	석 사
. . ~ . .	대학교 학과	박 사

1.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책	담당업무내용
주요경력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기타활동 경 력	. . ~ . .			
	. . ~ . .			
	. . ~ . .			

2. 자격사항

구 분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비 고
자 격 증 (업무 관련)				
기타자격 (정보화, 운전면허 등)				

4. 기타 참고사항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 없습니다.

2025년 11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서명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자필 작성본, 파일(한글, PDF 등)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채용분야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 명시

②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 등 자세히 기재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제출) * 제출방법 참조

④ 경 력 : 안전관리 관련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하며,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별도 제출

⑤ 자 격 : 해당 자격증명 기재 및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수험번호	*담당자 기재	응모지역	도	00도	제출일	2025. 11. 00.
			시군	00시	성 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3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경력사항(직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휴먼명조 13p)*
  안전보건 관련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경험 및 실천 역량
  보고서 작성 등 사무관리 역량(한글, 엑셀, 사진편집, 정보검색 등 가능 여부 등) 등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등 기재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000농업기술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훈 등 여부, 전자우편,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선발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11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수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